

#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

제정일: 2025.08.04.

1차 개정일: 2026.02.26.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천제일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 학문적 진실성을 확립하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활용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코드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 "AI 활용 결과물"이란 생성형 AI를 전부 또는 일부 활용하여 작성한 과제, 보고서, 논문, 연구자료, 교육자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교육, 연구, 행정 등 우리 대학의 모든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본 원칙)

생성형 AI 활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 학문적 정직성: AI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며, 결과물은 본인의 사고와 표현으로 재구성
- 투명성: AI 활용 사실과 범위를 명확히 표기
- 비판적 검증: AI 생성 정보의 오류 및 편향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증
- 책임성: AI 활용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귀속
- 보안성: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의 입력 금지
- 공정성: 차별 및 혐오 콘텐츠 생성 금지

## 제2장 윤리적 활용 기준

### 제5조(허용 범위)

① 생성형 AI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학습 보조: 개념 이해, 내용 요약, 아이디어 발상
- 교육 지원: 강의자료 개발, 평가문항 작성, 학습 피드백
- 행정 지원: 공문서 초안 작성, 자료 정리
- 연구 지원: 문헌 조사, 번역, 문장 교정, 데이터 분석 보조

② 제1항의 활용 시에도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AI 생성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

2. 본인의 고유한 사고와 표현으로 재구성
3. 활용 사실을 명확히 표기

#### 제6조(금지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AI 사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공고한 평가 대상에 대해 무단으로 AI를 사용하는 행위
2. AI 활용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3. 개인정보, 미공개 연구데이터, 행정기밀 등을 AI에 입력하는 행위
4.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차별·혐오 콘텐츠를 생성하는 행위
5.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행위

#### 제7조(출처 표기)

① AI 활용 결과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AI 도구명 및 버전
2. 최종 사용 일자
3. 구체적 활용 목적 및 범위

② 출처 표기는 다음의 방식을 따른다.

##### [표기 예시 1 - 학생 과제]

본 보고서는 아이디어 발상 및 개요 구성 단계에서 ChatGPT-4(2025.12.01. 활용)를 활용하였으며, 모든 내용은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검증하였음.

##### [표기 예시 2 - 연구논문]

AI 활용: 선행연구 초기 검색 및 영문 초록 교정에 Claude 3.5(2025.12.01. 활용) 사용.  
연구 설계, 분석, 해석은 연구자가 독자적으로 수행

##### [표기 예시 3 - 교육자료]

본 강의자료의 사례 문항은 Gemini Advanced(2025.12.01. 활용)로 생성하였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함.

- ③ AI 활용 과정에서 사용된 핵심 프롬프트(명령어) 또는 AI와의 대화 로그 공유 링크를 주석이나 부록으로 첨부할 것을 권장한다.
- ④ 멀티모달(영상, 음성 등) 결과물의 경우, 사용된 원본 소스의 출처와 AI의 기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해야 한다.

#### 제8조(정보 검증)

- ① AI 생성 정보에는 사실 오류(Hallucination) 및 편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② 신뢰성 있는 복수의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 ③ 인용, 수치, 사실 등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및 보안)

- ① 다음 각 호의 정보를 AI에 입력하는 것을 금지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적 등)
  2. 미공개 연구데이터 및 행정기밀
  3. 제3자의 동의 없는 정보
- ② AI 서비스 이용 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야 한다.
- ③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서비스 사용을 권장한다.

### 제3장 구성원별 책무

#### 제10조(대학의 책무)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생성형 AI 활용 정책의 수립 및 개선
2. 구성원 대상 윤리교육 및 활용교육 제공
3. AI 도구 접근성 보장 및 기술 지원
4. 우수 활용 사례의 발굴 및 공유

#### 제11조(교수자의 책무)

① 교수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AI 활용 범위 및 평가기준 사전 공지
2. AI 윤리 및 올바른 활용법 교육
3. 학생 정보 및 연구데이터 보안 철저
4. AI 생성 자료의 사실 검증

② 교수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

1. 맞춤형 강의자료 및 평가문항 개발
2. 학생 과제에 대한 1차 피드백 지원
3. 연구 효율성 증대(문헌 요약, 번역, 데이터 분석 보조)

#### 제12조(학생의 책무)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교과목별 AI 활용 지침 엄수
2. AI 활용 사실의 정확한 표기
3. AI 결과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검증
4. 개인정보 및 타인 정보 입력 금지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

1. 학습 보조: 어려운 개념 설명 요청, 학습자료 요약
2. 창의적 발상: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과제 구조화
3. 역량 개발: 외국어 교정, 코딩 디버깅, 모의 면접

#### 제13조(직원의 책무)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담당 업무 범위 내 생성형 AI 활용
  2. 개인정보 및 행정기밀 입력 금지
  3. AI 활용 결과물의 사실 여부 및 적합성 검토
  4. 생성형 AI 활용 사실 및 범위의 명확한 공유
-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
1. 행정 지원: 공문서·보고서 초안, 회의자료·회의록 정리
  2. 기획·분석 지원: 정책·사업 기획안 구성, 자료 요약
  3. 소통 지원: 안내문·공지사항·민원 응대 문안 작성
  4. 업무 개선: 반복 업무 자동화 아이디어,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제4장 위반 조치 및 지원

### 제14조(위반 판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지침 위반으로 본다.

1. AI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 범위와 방법(프롬프트 구성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은닉하여 제출한 경우
2.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여 발생한 오류(허위정보,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최종 작성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

### 제15조(조치)

- ①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② 학생의 경우 학칙상 학문적 부정행위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교직원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6조(교육 및 상담)

- ① 대학은 다음 각 호의 AI 교육 및 상담 체계를 운영한다.
  1.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AI 윤리교육
  2. 교수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3. AI 활용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 ② AI 교육 및 상담은 관련 부서(교육혁신원, 학사운영처 등)에서 담당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검토)

이 지침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제출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부록]

### AI 활용 체크리스트

#### ✓ 학생용 자가점검표

- 교수자가 제시한 AI 활용 범위를 확인했는가?
-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했는가?
- 핵심 내용은 본인의 사고로 재구성했는가?
- AI 활용 사실을 명확히 표기했는가?
-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는가?

#### ✓ 교수자용 자가점검표

- 강의계획서에 AI 활용 범위를 명시했는가?
- 학생에게 AI 윤리교육을 제공했는가?
- AI 생성 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증했는가?
- 학생 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았는가?
- 과정 중심 평가를 병행하고 있는가?

#### ✓ 연구자용 자가점검표

- 연구윤리위원회 지침을 확인했는가?
- 미공개 연구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는가?
- AI 활용 사실을 논문에 명시했는가?
- 참고문헌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 공저자와 AI 활용 범위를 협의했는가?